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2. 10 선고 2024가단4066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고C

변론 종결2024. 11. 12.

판결 선고2024. 12.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30.부터 2024. 1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2024. 4. 5.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3802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24. 4. 5. 이전에 그 이행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송달로써 그 이행을 최고한 다음 날인 2024. 8. 30.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넘어서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윤소희

별지